

정 관

주식회사 현대퓨처넷

2001.02.06.개정,시행

2001.08.20.개정,시행

2003.03.27.개정,시행

2005.11.17.개정,시행

2006.03.13.개정,시행

2006.11.01.개정,시행

2008.03.28.개정,시행

2010.03.25.개정,시행

2010.04.30.개정,시행

2010.06.25.개정,시행

2010.08.26.개정,시행

2011.03.25.개정,시행

2012.03.30.개정,시행

2015.03.27.개정,시행

2017.03.24.개정,시행

2018.03.27.개정,시행

2019.03.28.개정,시행

2020.03.24.개정,시행

2020.06.26.개정,시행

2021.03.25.개정,시행

2022.03.23.개정,시행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상호)

이 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함)는 “주식회사 현대퓨처넷” 이라고 한다. 영문으로는 “Hyundai Futurenet Co., Ltd.” 이라 표기한다.

제 2 조(목적)

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옥외 및 전시 광고업
2. 광고물 제작 및 광고 대행업
3.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
4. 소프트웨어, 정보통신업체 기타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, 인수, 합병
5. 소프트웨어, 정보통신업체 기타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, 기술개발 자문
6.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
7. 전기 통신업
8.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9.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
10.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, 소유, 관리 및 관련업,
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, 경영지원, 정리, 육성하는 지주사업
11.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업
12. 주차장 운영업
13.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
14. 의약품, 화장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
15.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
16. 교육 서비스업
17. 보관 및 창고업

18.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
19.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사업
20. 의료/휴식기기 제조, 개발 및 판매업
21. 디지털/모바일 콘텐츠 개발, 제작, 유통, 판매 관련 사업
22. 전기차 충전소 관련 사업
23. 정보통신공사업
24. 영상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
25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26. 렌탈사업
27. 무역업
28. 휴게음식점영업
29. 통신판매업
30. 전자지급결제대행업
31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

제 3 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)

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 단, 이사회결의로 대한민국 내외의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(광고방법)

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hyundaifuturenet.co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,000,000주로 한다.

제 6 조(1주의 금액)

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.

제 7 조(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)

회사는 설립시에는 400,000주의 보통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
제 8 조(주식의 종류)

- (1)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("A종 우선주식")으로 한다.
- (2)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A종 우선주식의 총수는 30,000,000주이다.
- (3) A종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
- (4) A종 우선주식의 발행조건은 별첨 1에 정해진 바와 같다.

제 9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10 조(신주인수권)

- (1) 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(2) 위 (1)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- 1.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;
 - 2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

발행하는 경우;

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;
4.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;
5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(DR)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;
6.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30,000,000주까지 A종 우선주를 신주 배정하는 경우 및 30,000,000주까지 보통주를 신주 배정하는 경우;
7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.

(3)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11 조(주식매수선택권)

(1) 회사는 임,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

(2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, 직원으로 하되,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최대주주(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및 그 특수관계인(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.)는 제외한다.
2. 주요주주(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 한다.)는 제외한다.
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
(3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(4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,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, 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(5)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
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(6)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.

(7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(8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교부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(9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당해 임,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;

2. 당해 임,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;

3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.

(10) 이사회는 기타 부가적인 조건을 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

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13 조(명의개서대리인)

- (1)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(2)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(3)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(4)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14 조 <삭제>

제 15 조(주주명부폐쇄)

- (1)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
- (2)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다음 결산기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(3)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주 주 총 회

제 16 조(주주총회의 소집)

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
제 17 조(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)

(1)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총회일 2주간 전에 대표이사가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주주총회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집된다. 만일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,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 다른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.

(2) 위 제1항 소정의 기간은 회사가 총회 개시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, 전보, 인터넷메일 등을 통한 동의를 받을 경우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.

(3)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문화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18 조(소집지)

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19 조(의장)

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.

제 20 조(결의)

본 정관이나 법률에 의해 더 높은 비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모든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사분의 1(1/4)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해 채택된다.

제 21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(1)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,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(2)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2 조(주주의 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보통주 1주마다 1개, 우선주 1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 23 조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

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4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(1)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(2)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5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(1)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(2)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4 장 이사 및 이사회

제 27 조(이사의 수)

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제 28 조(이사의 선임)

- (1)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(2)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(3)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29 조(이사의 임기)

- (1)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- (2) 보선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 이사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(3)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30 조(이사의 보선)

- (1)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(2) 사외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1 조(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)

- (1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- (2)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(3)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
- (4)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32 조(이사회 의 결의방법 및 권한)

- (1)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임중인 모든 이사의 과반수로 이루어지고,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(2) 권한의 위임,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 33 조(대표이사 등)

회사는 이사회결의로 2인 이하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.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장/CEO가 되며,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.

제 34 조(이사의 보고의무)

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각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35 조(이사회 의사록)

(1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(2)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35 조의 2(위원회)

(1)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감사위원회
2.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
3. 보상위원회
4. 내부거래위원회
5. ESG경영위원회
6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(2) 각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36 조(업무수행)

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가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7 조(보수와 퇴직금)

- (1) 이사의 보수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(2)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38 조(상담역 및 고문)

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 39 조 <삭제>

제 40 조(필요한 인사의 출석)

의장인 이사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타 인사를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러한 인사는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, 이사는 기밀사항을 논의하거나 표결하는 경우 이러한 인사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5 장 감사위원회

제 41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(1)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(2)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(3)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감사위원회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(4)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- (5)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
- (6)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(7)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(8) 사외의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42 조(감사위원회의 직무)

- (1)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(2)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(3)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(4)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
(5)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(6) 감사위원회는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.

제 43 조(감사록)
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6 장 계 산

제 44 조(영업년도)

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5 조(재무제표,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)

(1)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대차대조표

② 손익계산서

③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
- (2)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(4)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6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

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제 47 조(이익금의 처분)

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① 이익준비금
-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
- ③ 배당금
- ④ 임의적립금
-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
- ⑥ 차기이월이익잉여금

제 48 조(이익배당)

- (1) 이익의 배당은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(2)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- (3)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제 49 조(중간배당)

- (1)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
- (2)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
- (3)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1.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;
 2.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;
 3.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;
 4.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;
 5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.
- (4)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- (5)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.

제 50 조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(1)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(2)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(1) 본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별첨 1. A 종 우선주의 조건

- (1) 각 A 종 우선주에 대하여, 그 주식의 보유자(“우선주주”)는 A 종 우선주 액면가의 1%의 배당(A 종 우선주의 주식배당, 주식분할, 자본조정, 병합 등의 경우 해당 A 종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함)을 각 매년 비누적적으로 지급 받을 자격이 있으며, 동 배당은 법적으로 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자산에서,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분배에 우선하여 지급받는다.
- (2) A 종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당시 발행된 A 종 우선주의 수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결의, 지급된다.
- (3) 어느 연도에 회사가 A 종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인 배당과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동일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가지는 경우, 보통주식 보유자(“보통주주”)도 당해 회계연도의 배당가능이익으로부터 A 종 우선주의 주주와 동일한 비율(여기서 동일한 비율이라 함은, 보통주식 및 A 종 우선주 각각에 대하여 주당 동일한 금액(예를 들어 제 2 항의 배당금 또는 제 4 항의 청산이익)이 되는 비율을 의미한다)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. 배당가능이익이 위 정한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관하여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, 배당가능이익을 보통주주 간에 그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. 보통주주가 위 배당을 받은 경우, 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추가 배당을 할 수 있고, 그러한 추가 배당은, 보통주식의 수와 A 종 우선주의 수(A 종 우선주의 수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산정)에 따라 보통주식과 A 종 우선주에 대하여 동등하게 각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결의, 배당한다.
- (4) 회사가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청산, 해산 또는 정리되는 경우, 우선주주는 각자 보유한 A 종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주에 대한 배분에 우선하여 (i) 주당 인수대금의 100%와 (ii)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의 합계액(“우선 금액”)을 배분 받을 수 있다.

우선주주에게 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회사의 자금 및 자산 (“배분가능자산”)이 우선 금액 전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, 배분가능자산은 우선주주들 간에 각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. 배분가능자산에서 우선주주들에게 우선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도 잔여 배분가능자산이 존재하는 경우, 보통주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분가능자산에서 우선주주들과 같은 비율로 지급받는다. 배분가능자산이 위 정한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관하여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, 배분가능자산을 보통주주 간에 그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. 만약 보통주주와 우선주주에게 지급한 후에도 잔여 배분가능자산이 존재할 경우, 그러한 잔여 배분가능자산은 보통주주와 우선주주들 간에 그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, 이 경우 A 종 우선주 수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.

- (5) 각 A 종 우선주는 보유주주의 선택에 따라 A 종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0 년 내에 언제든지, 전환에 의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의 발행가격을 A 종 우선주의 전환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보통주식의 가격(“전환가격”)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. 이 때 보통주식의 발행가격은 주당 인수대금으로 하고, 최초 전환가격은 위 발행가격과 같다. 그러한 최초 전환가격은 주식의 분할, 병합 및 기타 자본조정의 경우 A 종 우선주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조정될 수 있고, 구체적인 조정사유 및 조정방식은 A 종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A 종 우선주가 전환되면, 그에 대해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.
- (6) 회사는 언제나 수권자본주식 중 미발행된 보통주식의 수 및 준비금을 충분히 유지하여 발행된 A 종 우선주 전부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선주주의 전환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본 정관의 이행 및 정관 개정을 포함하여 적절하거나 필요한 모든 행위의 이행에 언제나 조력하여야 한다.
- (7) 회사는 제 1 항 배당률 조정, 제 5 항 전환가격 조정 외에, A 종 우선주 발행조건에 관하여, 정관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 상법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 종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.